|  |  |  |
| --- | --- | --- |
|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 기업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5년 제19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중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설립 및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 관리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국독자 형식으로 설립한,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적송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위탁인을 위해 국제화물운수 및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아울러 서비스보수를 수취하는 외국투자기업(이하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라 약칭함)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가 국제 속달우편업무를 경영하는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상무부가 심사 비준 및 관리를 책임지며, 외국투자자가 기타 업무를 경영하는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또는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 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 주관부서라 함)가 심사 비준 및 관리를 책임진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국제 속달우편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변경 등 사항은 등록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관리한다.  제4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외국투자자는 합자, 합작방식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005년 12월 11일부터는 외국독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외국투자자는 지분매입의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단 지분비율 및 투자자의 자격은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유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따라 수속해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허가를 받고 하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할 수 있다.  1. 선창주문(선박임대, 전세기, 전세선창), 탁송, 창고보관, 포장  2. 화물의 선적감독, 하역감독, 컨테이너의 집합 분리작업, 분견(分遣), 중개 및 관련 단거리 운수 서비스  3. 통관, 검증, 검사 및 보험수속 대행  4. 관련 증빙서류 작성, 운임납부, 결산 및 잡비납부  5. 국제전시품, 개인 물품 및 국경통과 화물의 운수대행  6. 국제 복합운수, 집합운수(컨테이너의 집합 분리 포함)  7. 국제 속달우편(개인 서한과 현급 이상의 당, 정, 군 기관의 공문서 우송업무 제외)  8. 컨설팅 업무 및 기타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제7조 서한과 서한 성격의 물품(개인 서한과 현급 이상의 당, 정, 군 기관의 공문서 우송업무 제외)의 국제 속달우편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무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우체부서에서 우체 위탁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국가의 현행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에 제10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방법 제3조 및 기타 외국투자 법률, 법규에 따라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9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  3.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계약과 정관, 외국독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정관 제출  4.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각방의 이사 위임장  5. 공상행정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 사전 인가통지서  6. 투자자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등록등기 증명서류 및 은행의 신용증명서류.  제10조 지사의 경영범위는 그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로 국한된다. 지사의 민사책임은 본사가 부담한다.  제11조 지사 설립 신청은 본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본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지사 설립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한다. 이 방법 제3조 및 기타 외국투자 법률, 법규에 따라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신청서류와 지사 설립지의 상무 주관부서의 동의서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상무부의 심사 허가를 받는다. 심사 허가절차의 기간은 제9조와 동일하다.  제12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려면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서  3.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자 관련 이사회의 결의 및 증자사항에 대한 합영 계약, 정관 개정합의서, 외국독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정관 개정합의서만 제출  제13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중국 국제화물 운수대리협회, 중국 외국투자기업협회 등 민간단체 또는 업종협회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업종 감독, 지도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제14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와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이 대륙에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이 국제화물 운수대리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등록비치 작업은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구체 사항은 상무부가 별도로 통지한다.  제17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18조 이 방법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규정》(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2] 제36호)과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규정> 보충규정》(상무부 령 [2003] 제1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  **管理办法**  （商务部令2005年第19号，根据2015年10月28日《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和规范性文件的决定》修正）  　　第一条 为促进中国国际货运代理业的健康发展，规范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设立及经营行为，根据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法规和《中华人民共和国国际货物运输代理业管理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是指外国投资者以中外合资、中外合作以及外商独资形式设立的接受进出口货物收货人、发货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或者以自己的名义，为委托人办理国际货物运输及相关业务并收取服务报酬的外商投资企业(以下简称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  第三条 外商投资设立经营国际快递业务的国际货运代理企业由商务部负责审批和管理；外商投资设立经营其他业务的国际货运代理企业由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以下简称省级商务主管部门)负责审批和管理。  　　本办法实施前已设立的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如不从事国际快递业务，其变更等事项由注册地省级商务主管部门负责办理。  　　第四条 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应遵守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及相关规章，其正当经营活动及合法权益受中国法律的保护。  　　第五条 外国投资者可以合资、合作方式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  　　自2005年12月11日起，允许设立外商独资国际货运代理企业。  　　外国投资者可以收购股权方式收购已经设立的国际货运代理企业，但股权比例以及投资者资质须符合本规定要求，涉及国有资产的须按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  第六条 经批准，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可经营下列部分或全部业务：  　　(一) 订舱(租船、包机、包舱)、托运、仓储、包装；  　　(二) 货物的监装、监卸、集装箱拼装拆箱、分拨、中转及相关的短途运输服务；  　　(三) 代理报关、报验、报检、保险；  　　(四) 缮制有关单证、交付运费、结算及交付杂费；  　　(五) 国际展品、私人物品及过境货物运输代理；  　　(六) 国际多式联运、集运(含集装箱拼箱)；  　　(七) 国际快递(不含私人信函和县级以上党政军机关公文的寄递业务)；  　　(八) 咨询及其他国际货运代理业务。  　　第七条 从事信件和信件性质物品(不含私人信函和县级以上党政军机关公文的寄递业务)国际快递业务的企业经商务主管部门批准后应向邮政部门办理邮政委托手续。  　　第八条 设立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应按国家现行的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法规所规定的程序，向省级商务主管部门呈报第十条规定的文件。  　　省级商务主管部门自收到全部申报文件30日内，作出同意或不同意的决定，经审查批准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书面说明理由。根据本规定第三条及其他外商投资法律法规超过省级商务主管部门审批权限的，省级商务主管部门应在对报送文件进行初审后，自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15日内上报商务部。  　　商务部应自收到全部申报文件60日内，作出同意或不同意的决定，经审查批准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书面说明理由。第九条 设立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需提供如下文件：  　　(一) 申请书；  　　(二) 项目可行性研究报告；  　　(三) 设立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的合同、章程，外商独资设立国际货运代理企业仅需提供章程；  　　(四) 董事会成员名单及各方董事委派书；  　　(五) 工商部门出具的企业名称预核准通知书；  　　(六) 投资者所在国或地区的注册登记证明文件及资信证明文件。  　　第十条 分公司的经营范围应在其总公司的经营范围之内。分公司民事责任由总公司承担。  　　第十一条 申请设立分公司的，应向总公司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由总公司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在征得拟设立分公司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同意意见后批准。根据本规定第三条及其他外商投资法律法规超过省级商务主管部门审批权限的，省级商务主管部门应在初审后将全部申请材料及拟设立分公司所在地商务主管部门的同意意见函上报商务部，由商务部负责审批。审批程序时限同第九条。  　　第十二条 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设立分公司需提供以下文件：  　　(一) 申请书；  　　(二) 董事会决议；  　　(三) 如增资，需提交有关增资的董事会决议及增资事项对合营合同、章程的修改协议，外商独资国际货运代理企业仅需提交章程修改协议。  　　第十三条 鼓励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参加中国国际货代协会、中国外商投资企业协会等民间团体及同业行会，自觉接受同业监督和指导。  　　第十四条 香港、澳门、台湾地区的公司、企业、其他经济组织和个人在大陆投资设立国际货运代理企业，参照本规定办理。  　　第十五条 外商投资企业申请增加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参照本规定办理。  　　第十六条 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的备案工作由商务部统一负责，具体事宜由商务部另行通知。  　　第十七条 本办法由商务部负责解释。  　　第十八条 本办法自2005年12月11日施行，原《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管理办法》(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2002〕第36号)和《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管理办法补充规定》(商务部令〔2003〕第12号)一并废止。 |